

인천지방법원 2022. 5. 4 선고 2021가단1515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4. 27.

판 결 선 고 2022. 5. 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8,072,381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11. 2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지영

별지